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3호

**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**

제 출 자	조배식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#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제93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조배식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서승필,  
장진호, 이태모,  
윤금숙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(안 제5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- 나. 기타사항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 -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##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에 “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 다음 “단,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조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” 를 추가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의장” 을 “의회사무국장” 으로 하고 “각 상임위원장,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국장” 으로 한다), 전문위원으로 한다.” 를 “행정자치전문위원, 산업건설전문위원, 의회운영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, 산업건설전문위원, 의회운영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조배식 의원 외 5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<u>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5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단,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좌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.</p>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,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국장”으로 한다), 전문위원으로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의회사무국장----- 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, 산업건설전문위원, 의회운영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, 산업건설전문위원, 의회운영전문위원, 의사팀장,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
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 
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「지방자치법」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